

2017년도

계약번호 : 3100006927호

안 전 관 리 계 획 서

『용역명 : 2017년 상반기 하남역 CY장 2종용벽 외 1개소
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주)명성엔지니어링 (인)

III 목 차 III

1. 용역 개요
2. 안전관리조직
3. 작업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4.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계획
5.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 계획
6. 자체 안전점검 계획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8.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9.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2017년 상반기 하남역 CY장 2중용벽 외 1개소 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전라남도 화순군 일원



다. 목 적 : 일반철도시설의 개량 및 건설사업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2중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점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시행하는 하자검사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신속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라. 용역기간 : 2017.05.12.~2017.06.20.

마. 용역개요

- 1-1) 시설물명 : 호남선 임곡~하남간 180.734km(좌) 하남역CY장 옹벽
- 1-2) 연장(구조형식) : L=643m(철근콘크리트+보강토옹벽)
- 1-3) 준공년도 : 2015년 9월
- 2-1) 시설물명 : 경전선 이양~능주간 256.765km(단) 저불강제2교
- 2-2) 연장(구조형식) : L=160m(IPC거더교)
- 2-3) 준공년도 : 201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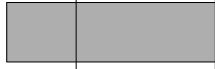
바. 발 주 처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사. 감 독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아. 용 역 비 : ₩7,83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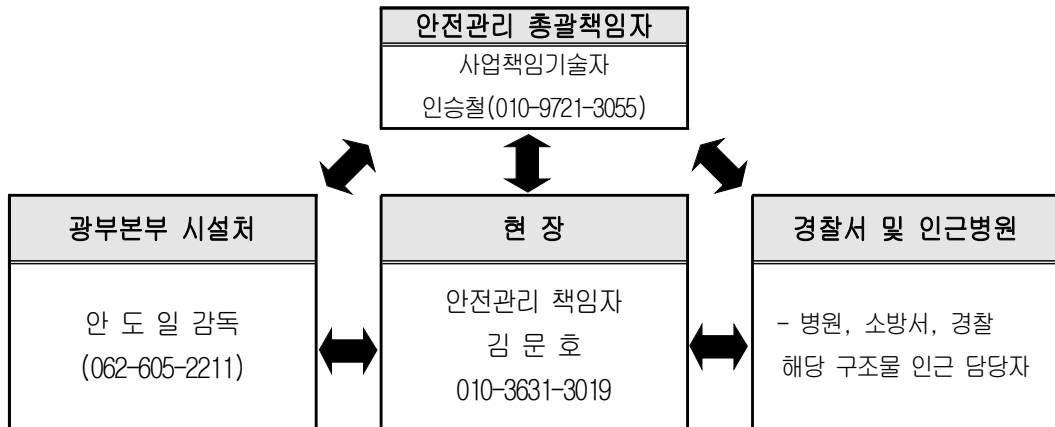
자. 용 역 사 : (주)명성엔지니어링

차. 예정공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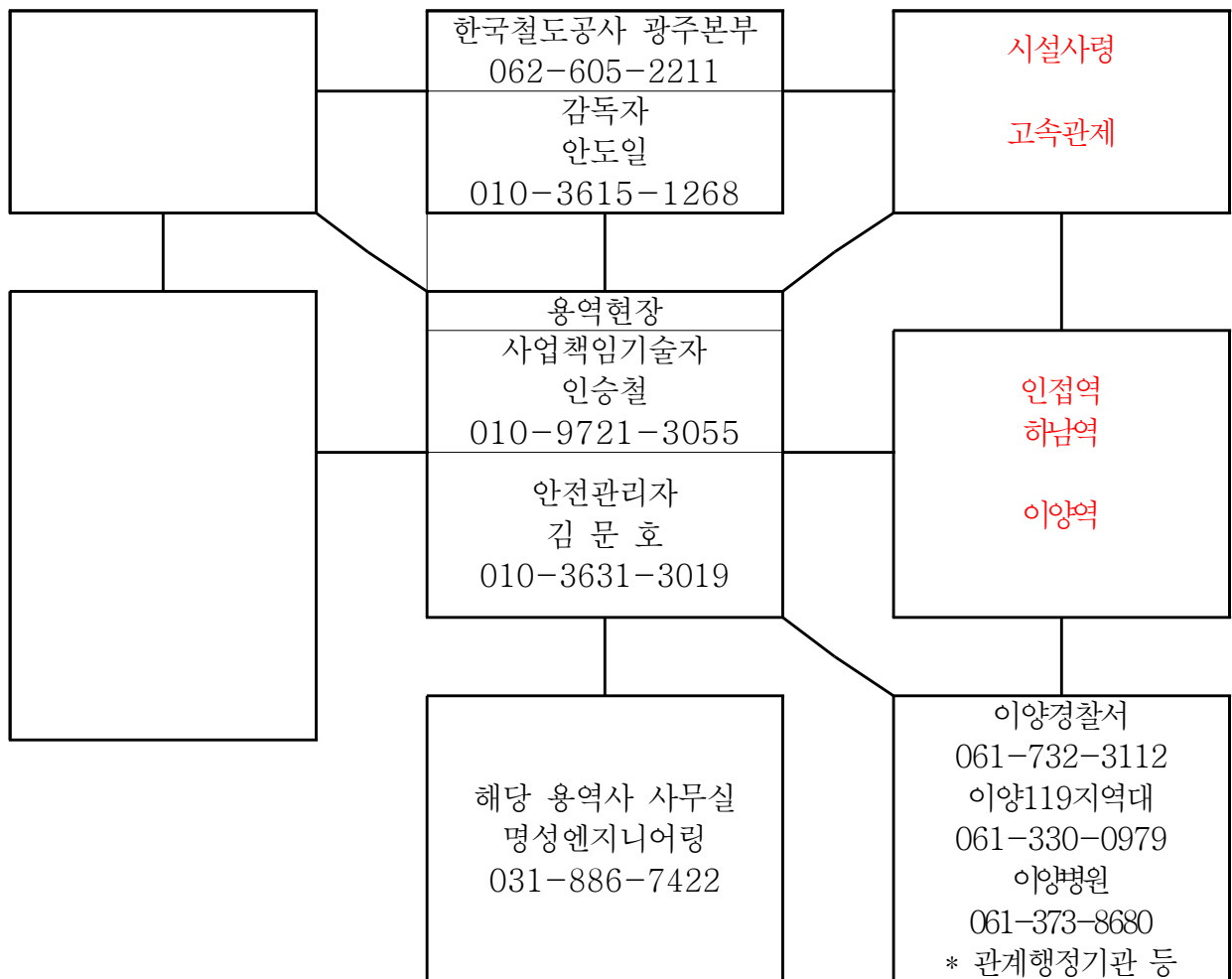
공 종	용 역 기 간 (일)				비 고
	10	20	30	40	
1. 자료수집 및 현장답사(착수보고)					
2.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					
3. 중간보고서 작성 및 중간보고회 시행					
4. 최종보고서 작성					
5.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착수일로부터 40일간

2. 안 전 관 리 조 직

가.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



나. 비상연락망



다. 안전관계자의 임무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지도 지원
- 다)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 라) 업체간 안전보호장구 구입 지급협의
- 마) 유해 위험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바) 점검관련 효율적 개선 및 점검 후 현장 확인계획
- 사)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정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확인
- 아)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 안전관리자

- 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
- 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 다)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라) 재해 원인 조사와 대책
- 마) 보호구 구매 시 적격여부 판정
- 사)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 열차운행선 공사안전관리 대책

- ③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배치 * 관련 : 토목시설처-226(2013.01.24.)
- 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위험등급 설정관리(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적용
 -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
 - (궤도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단, 제 10호 내지 제 11호 해당자는 제외)하는 자 중 1년 이상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토목/건축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⑤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

-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
-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
 -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이탈시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 *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상주하고, 복수(보조)감독자 배치 불가
-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 열차운행선(인접)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3) 관리감독자

- 가) 사업장내에서 관리 감독자와 지휘감독관은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나) 관리 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 다)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라)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와 확인 감독
- 마)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 사)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가. 작업장 주변의 위해예방

-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일 점검계획이 있는 점검 작업장의 고속선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출입승인 및 차단작업 승인 후 출입구역을 출입한다.
- 2)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도로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 3) 점검 시 도로의 점용이 필요한 중장비의 사용 시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운전자 및 보행자가 보기 쉽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견고히)한다.
- 4) 용역착수 전 발전기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현장주변의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 및 양해를 구하여 점검협조를 요청한다.

나. 출입금지의 조치

- 1)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은 구체적으로 위험내용을 기술한 안내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다. 추락예방 조치

고소점검이 필요한 개소에는 울타리 및 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 추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시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악천후 시 대책

- 1)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책임자는 점검중지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 2) 기상의 급변이나 비상사태를 주의하며 사전에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3) 폭우나 강풍이 예상되는 점검현장 및 주변을 사전에 정비한다.
- 4) 낙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점검 작업의 중지를 검토한다.
- 5) 집중호우, 태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로 인하여 호남고속선의 노반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원인파악 등에 협조한다.

마. 기 타

- 1) 차단작업 중 반대선 열차운행이 있는 경우 열차감시자 배치를 철저히 한다.

- 2) 차단작업 중 반대선 열차진입 시 모든 점검은 중지하고 통과 시 까지 대기한다.

4. 운행선 차단점검 안전관리 계획

가. 개 요

본 용역의 점검은 열차운행선상에서 시행함에 따라 반대선 차단장비의 운행 및 동일 선상의 열차접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반드시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접 및 반대선의 차단장비 작업 시 수신호기, 메가폰, 무전기, 열차시간표 등을 지참한 감시원을 반드시 배치 후 작업시행

나. 준비사항

- 1) 안전한 차단작업을 위해서 철도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 2)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건설규칙 : 국토해양부령 제163호 (전부개정2009.09.01)

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정 2014.06.13., 제76호)

<작업 관계자의 이해>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제3조 정의>

가. 작업책임자 : 작업에 대한 협의, 지휘, 감독, 안전관리 등을 종사토록 시행부성장이 지정한자 (책임감리에 의한 작업은 감리원을 작업책임자로 지정)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선로지장작업 현장에서 철도안전법 제59조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자

다. 운행안전협의담당자 : 철도공사 직원으로서 지역본부장이 발행한 “운행안전담당자증”을 소지하고 선로지장작업 현장에서 철도안전법 제59조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자

라. 전기안전관리자 : 전차선로 근접공사의 안전관리 및 급·단전 업무협의를 시행하는 자

* 선로지장작업 : 철도보호지구내에서 시행되는 차단작업, 열차사이작업, 상례작업을 통칭

다. 사전조사

- 1) 운행선 점검계획 수립 전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가) 콘크리트 도상점검 설계서 확인

나) 현장답사 하여 조사사항

- (1) 점검개소의 점검구간 위치
- (2) 철도 시설물 배치도
- (3) 운행선 근접도로 및 작업진입 통로
- (4) 기타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요인 등

라. 작업시행 전 준비사항

1) 당일 작업계획 수립

가) 관리사무소 및 고속관제에 당일 작업내용 등 운전협의 철저 시행

<제 33조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 및 조치>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고속선 관제사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 단, 고속선의 철도운행안전협의는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 제8조 및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 38조 고속선 작업을 시행 할 경우 조치> *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

제 38조(고속선 작업을 시행 할 경우 조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 및 관제사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시행하기 전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사에게 운전명령서식 제10호[열차운행중인 선로의 작업요구(위험지역 외)] 및 제20호[열차운행중인 선로의 작업과 작업자 보호요구(위험지역 내)]에 따른 요구. 이 경우에 작업계획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제사에게 재차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시행할 것

나. 관제사는 가목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승인하고 작업시행 전 작업자 보호(ZEP) 및 전차선보호(ZCP) 조치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전 현장에 설치된 역구내방호스위치(TZEP) 또는 폐색구간 방호스위치(CPT)로 작업자 보호조치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사는 열차운행중지 여부를 상호 확인

나) 공사감독 및 사업책임기술자 간에 작업계획 사전협의

* 점검위치 및 방법, 점검장비와 인원 동원 계획 등

다) 동원인원, 점검장비 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 확인

<제 38조 작업시행승인>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작업 당일 작업시행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속선에서 선로작업 시행할 때)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 요청

나.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한 후 승인

다. 관제사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고속선 로컬관제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 고속선 및 연결구간의 경우 열차운행선로 지장업무 지침 참조

* 차단작업 승인 전 절대 임의 작업 금지

마) 차단시간 내 점검할 수 있는 적정작업량 계획 수립

바) 작업완료 후 현장점검 및 안전확인(당일 교육내용에 반영)

2)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점검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제 9조 작업 전 안전교육>***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가. 당일 작업계획(작업 순서와 방법 등)
 - 나. 개인별 임무
 - 다. 열차감시인, 건널목임시관리원 지정 및 임무, 근무요령 등
 - 라. 그 밖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항
-

나)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 복장 부적격자 현장투입 제한

다) 유사사고 발생사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후 작업 투입

라) 작업원 통행로 지정(임의 작업 금지)

3)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가) 열차감시원 배치 필요 시 안전장구(무전기, 호루라기, 메가폰, 손전 등, 열차기간표, 적·백 신호기, 단락동선 등)휴대

* 열차운행선로지장 업무세칙 제13조(열차감시인 배치)

* 단선구간, 양방향운전구간,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 열차접 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개소는 전·후 양방향에 배치

<열차감시인 업무>

▷ 열차감시인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한다.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 등 현시

② 열차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 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한다.

④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나) 전차전 근접 작업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열차운행선로지장 업무세칙 제36조(전차선 단전 및 급전취급)의 절차에 의거 단전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는 관제사로부터 단전 요청 및 승인 후 단전이 된 것을 확인하고 접지장치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료 후 작업 책임자에게 통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 ▷ 전차선 단전작업시 전기사령과 급단전 업무협의
- ▷ 충전전류 제거를 위한 접지결이 설치 및 철거
- ▷ 전차선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차선로 근접작업 감시
- ▷ 관할 전기소속 및 전기사령에 작업계획, 실적 통보

마. 작업시행 중 확인사항

1) 열차감시원 및 안전요원 배치

- 가) 열차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 및 안전요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휴대품 소지여부(무전기, 호루라기, 메가폰, 손전등, 열차기간표, 적·백 신호기, 단락동선 등) 확인

2) 장비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 장비 전도방지 및 시설물 저촉여부 확인

- 가)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안전울타리, 휀스)
- 나) 장비 및 운반차량 진·출입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 다) 크레인 작업 시는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크레인이 지반의 지지력 부족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지반다짐 및 개량, 철판 설치로 충분한 지지력 확보 후 시행
- 마)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직접교육 시행

바. 작업시행 후 확인사항

- 1) 작업완료 후 건설장비나 자재 등 건축한계외방에 안전이격 거리 확보 확인
- 2)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 투입, 발생자재는 종류별, 규격별 결박조치
- 3) 작업종료 사항을 고속관제에 통보

사. 열차운행선(인접) 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세부공종별 위험도 등급제를 도입하여 공사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행

1)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구 분	공 사 종 류	비 고
A 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 통신관, 架空電線路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²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 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 통신관, 架空電線路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²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각 열사이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축보도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각열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화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 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 (장비가 없는 경우)	

* 공사내용보다 세부적용 공종을 우선하고, 낮은 등급 공사도 일부 공종이 상위등급일 경우 공종별 상위등급 적용

* 단일 공사에서도 세부 공종별로 달리 적용

2)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구 분	안전관리 강화	비고
A 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 (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 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 등급	○ 분기별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합동점검 : 지역본부(주관부서 또는 안전처)와 현업 소속(사업소장(팀장), 선임장)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아. 운행선 인접공사 취약요인별 안전관리 강화

1) 전차선 근접 공사시 안전교육 강화

* 전차선 구간 위험작업 : 장비작업, 승강장 홈 지붕작업 등

2) 작업인부 선로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

* 임의 작업 및 단독작업 금지

3) 우천시 노반붕괴, 선로매몰, 침수예방 철저

* 우기시 절·설토구간 천막 및 비닐덮기 시행

* 침수우려개소 양수기 배치 및 배수로 정비

4)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훼손,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

* 관련부서에 사전협의 후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 시행

* 시설물 훼손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

5) 공사자재 관리부실로 인한 선로장애 발생 방지

* 공사장내 자재 정리·정돈 철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운행선 근접공사 안전관리 교육철저 시행

5.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 계획

가. 점검연장이 길어 특별관리 필요

- 1) 야간작업으로 인해 작업자의 피로도가 증대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항시 체크 후 작업투입.
- 2) 현장작업계획 수립시 작업구간과 출입문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일일작업계획을 수립.

나. 야간 차단점검으로 작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 필요

- 1) 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관리자는 출입문 관리 철저.
- 2) 작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고 개별이동 금지.
- 3) 작업자간의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장 이동 중 문제 발생시에는 즉시 안전관리자 또는 철도운행관리자에게 보고.

다. 작업 전후 안전관리 필요

- 1) 작업 전 개인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착용상태가 불량할 경우 현장출입 금지 후 별도의 안전교육 실시.
- 2) 작업 후 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관리자는 선로에 이물질(분필, 장갑 등)이 떨어졌는지 등을 확인 후 작업 완료보고.

라. 트러스 구간 하부 진단시 안전관리 필요

- 1) 고속도로 갓길 차단후 고소점검차 점검시 유관기관인 도로공사와 고속도로순찰대와 협의하여 실시
- 2) 고속도로 안전관리 기준에 의해 갓길차단시 안전관리방안에 의거하여 차단시설을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 실시

6. 자체 안전점검 계획

가. 일일점검

- 1) 점검 및 순찰구간 : 전 작업장
- 2) 실시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공사 감독관
- 3)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 : 1일 1회 이상 점검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 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음주 후 출근상태
- 나)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 상태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 다) 작업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 라) 작업장내 정리·정돈상태 점검
- 마) 기타 작업장내 불안정한 상태 및 불안정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 바)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5) 조치결과

- 가)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화
- 나) 점검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예정
- 다)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계자 협의 후 안전총괄 책임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가. 안전보건 교육계획

- 1) 안전보건 교육은 안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시키어 기능적 향상과 안전태도 향상으로 해당작업 및 공정에 대한 재해예방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2) 수급자는 운행선 근접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사 착수 전 전에 안전관리요원과 공사 작업원에게 운행선 근접공사의 특수성에 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 참조

3) 중점교육내용

- 가) 건축한계
- 나) 관련되는 철도공사 규정 및 지시
 -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처리지침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사고사례

- 다) 사고시 신속 보고요령과 열차정지방법
 - 라) 장비 운전자와 작업 지휘자와의 신호방법
 - 마) 열차감시원이 열차 진입시 작업원에게 알리는 방법과 작업인원의 대피 요령
 - 바) 공사 착공 전 철도공사와의 협의사항
 - 사)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4) 새로 투입되는 작업원이나 관련자는 현장 배치 전에 교육을 시행한다.
- 가) 인명과 열차운전의 안전확보
 - 나) 운행선상공사는 열차와 열차의 운행 사이의 시간 또는 차단후 시행
 - 다) 선로내 작업은 열차 근접에 대비하여 신속 대피방안 강구
 - 라) 현장 주행소음, 차량의 입환음, 공사장비의 소음 등으로 상호 연락체계 숙지
 - 마) 공구, 재료등의 정리정돈 철저
 - 바) 중장비를 이용한 근접공사

8.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가. 공사 중 장애발생 시

1) 긴급조치 구분

- 가) 상황파악 및 급보
- 나) 열차방호조치
- 다) 긴급복구

2) 상황파악 및 급보

사고보고는 긴급보고와 정식보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긴급보고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긴급보고

- ① 긴급보고는 공사중 어떤 사유로 선로가 열차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열차가 사고개소를 운행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므로 우선 사고의 현장에 열차의 진입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 ② 우선적으로 인접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예) : ○○역과 ○○역간의 ○○기점 000km,000m 부근에 00시 00분에 ○○사유로 열차통과 불가, 열차방호 조치요망.

- ③ 다음은 관계되는 부서의, 기관 등에 (야간, 휴무중에는 비상연락망에 의거) 보고한다.

나) 정식보고

정식보고는 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다) 열차방호조치(열차감시자)

- ①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도 사고 장소와 인접하여 열차는 운행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열차 방호 조치는 무엇보다 시급을 다투어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열차방호조치는 전항 (2)의 긴급보고와 동시에 병행하여 조치되어야 한다.
- ③ 열차방호 방법은 사고 운행선이 단선인 경우는 사고지점에서 양방향에서 취하고, 복선구간인 경우로 상하선중 1개선만 운전에서 지장이 있을 때는 해당선의 열차진입 방향에서 취하고 상하선이 동시에 지장을 받을 때는 상하선 진압방향 즉, 양방향에서 동시에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
- ④ 열차방호조치를 위하는 장소로 가는 도중 열차가 진입할 때는 그 자리에서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사상사고 발생 시

1) 긴급조치 구분

가)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나) 병발사고 방지

다) 상황급보

2)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가) 피해자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긴급연락

-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

- 나)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관계부서 긴급 연락
 -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3) 병발사고 방지

- 가) 열차방호가 필요할 경우 (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 열차방호조치에 의거 즉시 방호

- 나) 재해방지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3) 상황급보

- 가)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고현황 보고

- 나) 동종유사 재해 재발 방지

- 사고원인 조사(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

제264조(열차의 방호) ①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및 건널목사고 발생 또는 발견 시 즉시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를 시행한 후 인접선 지장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열검지 및 화재감지장치 설치차량의 경우 고장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06.18.><개정 2015.10.21>

② 열차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열차방호를 하여야 한다.

③ 열차방호를 확인한 관계 열차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정차시켜야 한다.

제 265조(열차방호의 종류 및 시행방법) ① 열차방호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1.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 :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역장은 열차방호상황발생 시 상황 발생스위치를 동작시키고, 후속열차 및 인접 운행열차가 정차하였음이 확실한 경우 또는 그 방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열차무선방호장치의 동작을 해제시킬 것 <개정 2015.03.12.> <개정 2015.06.18>

2. 무선전화기 방호 :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 순회 직원은 지장 즉시 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 2번) 또는 상용채널(채널1번 : 감청수신기 미설치 차량에 한함)에 놓고 “비상, 비상, 비상,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 라고 3~5회 반복 통보하고, 관계 열차 또는 관계 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 내용을 통보할 것. 이 경우에 기관사는 열차승무원에게도 통보할 것 <개정 2014.06.09> <개정 2015.03.12>

3. 열차표지 방호 : 지장 고정편성열차의 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은 뒤 운전실의 전조등을 점등시킬 것. 이 경우에 KTX 열차는 기장이 비상경보버튼을 눌러 열차의 진행방향 적색등을 점멸시킬 것

4. 정지수신호 방호 : 지장열차의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는 지장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것. 수도권 전동열차 구간의 경우에는 2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것

5. 방호스위치 방호 : 고속선에서 KTX기장, 열차승무원, 유지보수 직원은 선로변에 설치된 폐색방호스위치(CPT) 또는 역구내방호스위치(TZEP)를 방호위치로 전환시킬 것

6. 역구내 신호기 일괄제어 방호 : 역장은 역구내 열차방호를 의뢰받은 경우 또는 열차방호 상황발생시 ‘신호기 일괄정지’ 취급 후 관제 및 관계직원에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방호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운전보안장치취급매뉴얼에 따라 방호를 해제시킬 것 <신설 2015.03.12.>

② 열차의 방호는 지장선로의 앞·뒤 양쪽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열차가 진행하여 오지 않음이 확실한 방향과 무선전화기 방호에 따라 관계 열차에 지장사실을 확실히 통보한 경우에는 정지수신호 방호 또는 열차표지 방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역장

가. 방호 열차가 있는 방향에 대한 운전취급을 중지하고 통과할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차조치 할 것 <개정 2015.03.12>

나. 열차방호의 사유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후속열차의 운행을 하지 말 것

다. 선로 순회 직원으로 부터 무선전화기 방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열차운행 방향에 대하여 통보할 것

라. 특수차량의 열차방호를 통보받은 경우 관계열차의 기관사 및 장비운전원에게 방호상황을 통보 <신설 2015.03.12>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 ① 무선전화기 방호를 경청하였거나 통보 받은 관계자 별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장

가. 방호 열차가 있는 방향에 대한 운전취급을 중지하고 통과할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차조치 할 것 <개정 2015.03.12>

나. 열차방호의 사유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후속열차의 운행을 하지 말 것

다. 선로 순회 직원으로 부터 무선전화기 방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열차운행 방향에 대하여 통보할 것

라. 특수차량의 열차방호를 통보받은 경우 관계열차의 기관사 및 장비운전원에게 방호 상황을 통보 <신설 2015.03.12>

2. 기관사

가. 모든 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전하고, 자기 열차가 관계 열차인지 주의하여 경청하고 그 사유를 파악할 것

나. 관계 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열차를 즉시 정차하고 방호 열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 관제사 또는 관계역장의 지시에 따를 것 <개정 2015.03.12>

3. 열차승무원

가. 해당 열차의 열차승무원은 즉시 열차의 뒤쪽에 정지수신호 방호를 할 것

나. 관계 열차의 열차승무원은 기관사가 즉시 정차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열차 정차 조치를 할 것

4. 선로순회 직원

가. 관계 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것

나. 무선전화기 방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것

② 무선전화기 방호의 사유를 확실히 통보한 경우에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의 정지수신호 방호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사는 통보 받은 자의 직·성명을 기록·유지하고 열차승무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제267조(사상사고 발생 등으로 인접선 방호조치) ① 사상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시행지침」에 따라 사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접선 방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기관사는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사고개요 급보 시 사고수습 관련하여 인접선 지장여부를 확인하고 지장선로를 통보할 것

2. 지장선로를 통보받은 관제사는 관계 선로 운행열차 기관사에게 45km/h 이하 운행지시 등 운행정리 조치를 할 것

3. 인접 지장선로를 운행하는 기관사는 제한속도 준수하여 주의 운전할 것

② 기관사는 속도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열차가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8조(단락용 동선의 장치 및 휴대) ① 운전관계승무원, 시설·전기직원 또는 건널목관리원이 인접 선로 지장 또는 전 차량 탈선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지 않을 염려 있어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윗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장치하여 궤도회로의 단락 조치를 하고,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②궤도회로를 단락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단락용 동선을 즉시 철거하고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단락용 동선의 휴대·적재 및 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로순회 시설·전기직원 : 1개 이상
2. 각 열차의 동력차 : 2개 이상
3. 소속별 단락용동선 비치(연동 및 통표폐색식 시행구간 제외) <개정 2014.10.27>
 - 가. 각 정거장 및 신호소 : 2개 이상
 - 나. 차량사업소 : 동력차에 적재할 상당수의 1할 이상
 - 다. 시설관리반 : 3개 이상
 - 라. 건널목 관리원 처소 : 2개 이상
 - 마. 전기원 주재소 : 2개 이상

동종/유사업무 사고발생현황

(제4조 1항 관련)

사고종별	개 황	안전대책
호남선 익산-황등간작 업자 열차접촉 사고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동부건설(주)에서 인력회사(북부인력)에 요구한 작업인부가 동부건설(주) 현장사무소(작업자 집결장소) 신규자 안전교육 대기 중 교육장소에서 무단 이탈 ☞ (작업자 이탈경위) 작업자 등 어느 누구도 이탈경로를 모른다고 진술 ▶ 제1462무궁화 열차 33분간 정차, 1개 KTX열차 지장(7분 지연)	○단독 임의행동 금지 ○작업원 안전관리 철저 
호남선 익산역구내작 업자 감전사고	○ '13.03.04. 14:50경, 호남선 익산역 구내 신설 승강장 호남고속선건설사업 흙지붕 철골 도장작업중인 작업인부가 감전된 사고 ▶ 사망 1명	○작업전 안전교육 철저 ○작업 공종별 특정 위험군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경부선 평택역구내 작업원 열차접촉 사고	○2014.09.20. 03:31경 경부선 평택역 구내 작업원 1명 열차접촉 사망 - 감독자가 평택역과 상례작업 협의를 하러 간 사이 작업자가 선로 횡단 중 열차와 접촉 ▶ 사망 1명	○운행선 인접공사 관리감독 철저 ○작업협의 시행 전 선로 내 진입 및 임의작업 금지 ○열차감시 철저
경부선 용산-노량진 한강철교 낙하물 방지판 단부 빗물받이 탈락	○2014.09.08. 23:10경 경부선 용산-노량진 한강철교(A교 하3선) P2-P3 사이 낙하물 방지판 단부 빗물받이 탈락 ▶ 차량 4대 파손	○점검용역시 부착시설물 안전점검 철저(볼트부식, 이완, 변형유무 등)